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76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김선교 · 구자근 · 이현승
정동만 · 박덕흠 · 최수진
윤상현 · 김미애 · 박수민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

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육 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 시 소유자등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소할 수 있다”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유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소유자: 기질평가의 재실시,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 허가 신청 명령
3. 그 외: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명령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할 것”을 “하고,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것

제10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맹견의 경우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등록을 <u>말소할 수 있</u> <u>다.</u> 1. ~ 3. (생 략) <u><신 설></u> ⑥·⑦ (생 략)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정정 또는 말</u> <u>소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 <u>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u> <u>망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경</u> <u>우</u>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u> <u>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u> <u>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유자 정</u> <u>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u> <u>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u> <u>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1.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u>

<신 설>

<신 설>

구청장

2.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
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
방서장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제15조제5항제4
호에 따라 해당 동물의 등록사
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소유자: 기질평가의 재실시,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 명령

3. 그 외: 제24조에 따른 기질평
가 실시 명령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
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
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
동장치를 할 것

<신 설>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
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하고,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
할 것

2의2.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
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
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u>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u> 4. ~ 18.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u>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u>	<u>할 것</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u>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u> 4. ~ 1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소유자등</u>	<u>소유자등(맹건의 경우 제외한다)</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